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2. 6 선고 2015가단17536 판결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중앙회(변경전: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11. 1.

판결 선고 2016. 1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53,952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3.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4. 8. 초경 피고(변경전 명칭: C 주식회사) 소유인 E 전세버스(이하 필요하면 '이 사건 전세버스'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4. 9. 26. 위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당일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버스를 인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전세버스의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6079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행절차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11. 13. 「1. 원고는 피고에게 8,150만 원을 지급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565 자동차 가압류신청사건을 취하(해제)하며,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 사건 전세버스를 지칭함)에 관하여, 2014.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014. 3. 17. 접수 F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자동차임의경매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도록 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관계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전세버스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3. 17.경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9,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피고가 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아주캐피탈은 위 전세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임의경매(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를 신청하였고 2015. 12. 14. 매각대금 165,1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원고(대표이사 H)는 2015. 12. 18. 평택시 동작동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I 및 아주캐피탈 채권팀 담당자인 소외 J과 중고차 딜러인 D 등과 함께 만나 그 자리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8,150만 원을 마련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I은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전액을 주지 않으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렸다. 이 사건 전세버스에 대하여는 2015. 12. 2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책임의 70-80% 정도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소장이 2016. 1.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억 원 외에 4,500만 원을 별도로 다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각 그 금액에 대한 상계(공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위약으로 인한 손해 등 : 피고는, 당시 위 전세버스 매매가액 1억 8,150만 원을 받았어야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세버스를 매수하지 않은 귀책으로 경매됨으로써 낙찰가 165,161,460원에 매각되었는바, 그 손해금 합계 21,280,238원(=차량감액 16,338,540원 + 경매집행비용 2,590,34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위약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② 원고의 기망 등으로 인한 손해금 : 피고는, 원고는 위 2015. 12. 3.자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경매사건이 임박하자 자동차매수를 포기하겠다고 인감증명서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고 다시 피고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8,150만 원을 손해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손해금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③ 자동차공제보험료 :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11. 이 사건 전세버스에 대하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제보험을 가입한 후 그 공제가입금액(공제보험료)으로 1,746,33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7. 9. 위 전세버스의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2015. 6. 11.부터 2015. 7. 8.까지 약 1개월간의 공제보험료 145,528원(=1,746,330원 x 1/12, 원 미만은 올림)을

지급하겠다고 인정하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④ 운휴보상금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버스를 인도한 후 이를 이용하지 못한 운휴보상금 상당의 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는 원고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 여부 또는 선의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버스를 2014. 9. 26. 인도하였고 원고가 2015. 7. 9. 위 전세버스의 점유를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전세버스를 인도받자마자 에어컨 등을 장착하기 위해 바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2014. 10. 1. 출고하였으며, 다시 2014. 12. 7. TV나 오디오 등 노래방시설을 장착하기 위해 입고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위 전세버스를 인도받은 것은 2015. 12. 8.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4. 12. 8.부터 2015. 7. 8.까지의 운휴손해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에어컨, TV, 오디오 등의 설치는 모두 원고가 인도받은 후 단지 위 전세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버스의 1일 운휴보상금은 86,32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4,687,520원(=2014. 9. 26.부터 2015. 7. 8.까지 286일 x 8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할 돈 1억 원으로부터 위 자동차보험료 1,458,528원과 운휴보상금 24,687,520원 등 합계 26,146,048원을 같은 금액에서 상계(공제)한 나머지 73,853,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진홍